

[붙임] 원광보건대학교 규정 개정 승인문

1. 학교법인원광학원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개정내용

- 제36조의2(수탁사업의 운영) 제2항의 “사회복지시설 등의 운영에”를 “다음의 사업을 수행하며 시설 운영에”로 한다.
 - 같은조 같은항에 “1. 보육시설 2.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”을 신설한다.
 - 제101조(하부조직)에 제13항 “⑬ 수업연한 4년제 학과를 운영하는 학부에 한해 학사운영 팀을 둘 수 있으며, 직원을 둘 수 있다.”를 신설한다.
 - 같은조 기존 “제13항”을 “제14항”으로 항 변경하고, 같은항의 “제12항”을 “제13항”으로 한다.
 -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.
- “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제36조의2(수탁사업의 운영) ① 이 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교육·연구·실습 등을 위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수탁 받아 운영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<u>사회복지시설 등의 운영에</u>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 <신설> <신설>	제36조의2(수탁사업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<u>다음의 사업을 수행하며 시설 운영에</u>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 1. 보육시설 운영 2.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
제101조(하부조직) ① 원광보건대학교에 대학교당, 기획조정처, 교무처, 입학홍보처, 학생성공지원처, 국제교류처, 총무처, 비서실, 대외협력실을 둔다. ② 대학교당 교무는 교무자격을 가진 교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고, 기획조정처장, 교무처장, 입학홍보처장, 학생성공지원처장, 국제교류처장은 교원으로 보하며, 총무처장은 일반직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 다만, 기획조정처장은 일반직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, 비서실장, 대외협력실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 각 부서에는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 부서장을 둘 수 있으며 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	제101조(하부조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 (안)
③ 기획조정처에는 기획조정팀, 평가관리팀을 두며, 팀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 ④ 교무처에는 교무팀을 두며, 팀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 ⑤ 입학홍보처에는 입학관리팀, 홍보전략팀을 두며, 팀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 ⑥ 학생성공지원처에는 학생복지팀, 진로취업팀을 두며, 팀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 ⑦ (삭제20200723) ⑧ 총무처에는 총무팀, 관리팀을 두며, 각 팀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 ⑨ 국제교류처에는 국제협력팀을 두며, 팀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 ⑩ 비서실에는 의전팀을 두며, 팀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 ⑪ (삭제20200723) ⑫ 대외협력실에는 대외협력팀을 두며, 팀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 < 신 설 > ⑬ 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	③ ~ ⑫ (현행과 같음) ⑬ 수업연한 4년제 학과를 운영하는 학부에 한해 학사운영팀을 둘 수 있으며, 직원을 둘 수 있다. ⑭ 제1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	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생명윤리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개정내용

- 제1조(목적)의 “본교”를 “총장 직속의 위원회인”으로 한다.
 -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.
- “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원광보건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서 행해지는 모든 인간과 인체유래물등의 연구 수행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교 생명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원광보건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서 행해지는 모든 인간과 인체유래물등의 연구 수행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의 위원회인 생명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	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3.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개정내용

- 제3조(기구)의 “특별사업기구”를 “특별사업기구, 생명윤리위원회”로 하고, “원광보건대학교 BH공유대학사업단”을 “원광보건대학교 BH공유대학사업단, 원광보건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(HiVE)센터”로 한다.
 -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.
- “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제3조(기구) 우리대학에는 대학교당, 대학본부, 학부 및 학과, 산학협력단, 부속기관,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, 학교기업으로 구성하며 총장직속기구로 비서실, 대외협력실, <u>특별사업기구</u> 를 두며, 특별사업기구에는 LINC3.0사업단, K-MOVE사업단, 혁신지원사업단, <u>원광보건대학교 BH공유대학사업단</u> 등을 둘 수 있다.(별표1)	제3조(기구) 우리대학에는 대학교당, 대학본부, 학부 및 학과, 산학협력단, 부속기관,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, 학교기업으로 구성하며 총장직속기구로 비서실, 대외협력실, 특별사업기구, 생명윤리위원회 를 두며, 특별사업기구에는 LINC3.0사업단, K-MOVE사업단, 혁신지원사업단, 원광보건대학교 BH공유대학사업단, 원광보건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(HiVE)센터 등을 둘 수 있다.(별표1)
	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4. 교무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개정내용

- 제2조(구성)에 제2항 “② 국가 재정지원사업(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, 산학연협력선도전문대학(LINC3.0)사업, 원광보건대학교 BH(BioHealth)공유대학사업, 원광보건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(HIVE)사업 등) 사업단장은 교무위원급으로 예우한다. 단, 임명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”를 신설한다.
 - 같은조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항 변경하고,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항 변경한다.
 -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.
- “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부총장, 대학교당 교무, 대학본부 부서장, 산학협력단장, 비서실장, 대외협력실장, 학교기업 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교원 3인과 직원회의에서 추천하는 직원 2인으로 한다. < 신 설 >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,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 ③ (삭제20110228)	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국가 재정지원사업(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, 산학연협력선도전문대학(LINC3.0)사업, 원광보건대학교 BH(BioHealth)공유대학사업, 원광보건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(HIVE)사업 등) 사업단장은 교무위원급으로 예우한다. 단, 임명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u>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,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 ④ (삭제20110228)
	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